

의안번호	2216335
의 퇴 인	천준호의원
회 답 일	2026.2.10.
추계번호	26B0433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조제10항 신설 (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)	교통행정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도로의 구조·시설 등이 저상버스등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승인을 한 경우 해당 교통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로 정비 및 우회노선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0항 신설)	의무규정

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규정
1	안 제14조제10항 신설 (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□ 개정안은 교통행정기관이 도로의 구조·시설 등이 저상버스등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저상버스 운행 예외 노선을 승인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로 정비 및 우회노선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 이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임

○ 현행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3¹⁾은 교통행정기관

1) 제4조의3(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)

- ①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경우 도로관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, 해당 사유 해소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, 저상버스예외승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알려야 한다.

이 저상버스등의 운행 예외승인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통보·협조 요청 및 해당 사유에 대한 개선계획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그러나 개정안은 현행 예외승인 사유에 대한 관리·보고의 내용에 ‘1년 이내에 도로 정비 및 우회노선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’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, 그간 시행되지 않았던 도로 정비 사업 등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정비비, 노선조정, 안전시설 설치비 등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다만, 도로 정비기준 대상 및 정비방법·우회 노선 마련 등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 사업범위와 규모가 불확정적이고, 각 교통행정기관별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므로 정비가 필요한 도로연장, 우회노선 신설·조정규모 등 추계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부재하여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③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노선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저상버스예외승인 사유에 대한 개선 계획 등에 따라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노선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(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행화한 자료를 말한다)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.

1. 저상버스예외승인 노선 및 사유

2. 제1호의 사유에 대한 개선 계획 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책(개선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한다)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